

#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
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2항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0년 4월 28일

##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

### 1. 관련근거

- 가.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
- 나.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0조의2(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)
- 다.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(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)(국토교통부 고시)

### 2. 신청자격

- 가.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‘종합’, ‘건축’, ‘토목(교량 및 터널)’, ‘토목(수리)’ 분야 등록 업체
- 나.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(개인사업자는 관련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)

### 3. 안전점검 수행대상

-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0조 1항에 따른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

### 4. 제출자료

- 가.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[붙임 1]
- 나.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[붙임 2]
- 다.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1부
- 라.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
- 마.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

## 5.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일정

구 분	일 정	비 고
수행기관 모집 공고	'20.4.28(화) 17:00	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 ( <a href="http://www.i-sh.co.kr">www.i-sh.co.kr</a> , 알림서비스-공고 및 공지-기타)
신청서 접수·마감	'20.5.19(화) 18:00	방문접수 (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4층 재난안전실)
등록명부 공개	'20.5.22.(금) 17:00	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 ( <a href="http://www.i-sh.co.kr">www.i-sh.co.kr</a> , 알림서비스-공고 및 공지-기타)

※ 추진 일정은 우리공사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6. 적격자 선정 결격사항

- 가. 모집공고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은 명부작성에서 제외합니다.
- 나. 모집공고일 현재 모집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명부작성에서 제외합니다.
- 다. 제출서류가 거짓,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명부작성에서 제외합니다.

## 7. 기타사항

- 가. 등록분야가 복수인 수행기관(예시 : 건축, 교량 및 터널 )은 등록신청서 작성시 “신청분야”란에 신청을 원하는 분야에 모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(종합분야는 종합분야만 체크).
- 나. 분야별 신청기관이 5개사 미만일 경우 해당분야는 재공고합니다.
- 다. 명부 관리는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.
- 라. 추후 각 건설공사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시 명부에 등록된 수행기관 중 지정하고, 지정된 수행기관은 건설공사 시공자와 계약 체결합니다.
- 마. 관련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재난안전실 담당자(02-3410-7902, fen@i-sh.co.kr)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## 8.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일정(향후)

구 분	일 정	비 고
수행기관 지정 공고	건설공사별 별도 안내	시공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시 등록명부의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지정 공고 ( <a href="http://www.i-sh.co.kr">www.i-sh.co.kr</a> , 알림서비스-공고 및 공지-기타)
수행기관 평가	건설공사별 별도 안내	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(국토교통부 고시)”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※ 세부평가기준은 건설공사별 지정 공고시 공개
수행기관 지정 공개	평가완료 후 1일 이내	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 ( <a href="http://www.i-sh.co.kr">www.i-sh.co.kr</a> , 알림서비스-공고 및 공지-기타)